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571
----------	------

2016년 12월 19일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6. 12. 9. 박준희 의원 외 11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. 12. 12.
- 다. 상정 일자 : 제271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, 2016년 12월 19일 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박준희 의원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집단에너지사업,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시민복지를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를 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관부서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추가함(안 제33조제1항제4호마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타사항 : 해당사항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박노수)

1 개정안의 개요 및 취지

- 본 개정안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친환경에너지 사업을 수행하는 '서울에너지공사'가 설립될 예정인바(2016. 12월 말), 이 지방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지정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효과적인 견제·감시 및 정책대안 제시를 도모하고자 제안됐음.

2 ‘서울에너지공사’ 소관 배정(안 제33조제1항 제4호 마목 신설)

-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)는 집단에너지 확대, 친환경에너지 이용·보급 및 기술 개발, 에너지복지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지방공사인 ‘서울에너지공사’(이하 “공사”)를 2016. 12월 말 설립 예정임.
- 이는 공사 설립을 통해 지역 중심의 에너지 정책 수립과 집행에의 전문성,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미래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됨.
- 공사는 3본부 2실 7처 1소, 총 221명 정원으로 구성될 예정으로, 최근 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의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음 (2016. 11. 24 인사청문회 실시, 11. 29 시장 임명).

<그림-1> 서울에너지공사 조직 구성



- 한편,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서울시 생활환경, 생태계, 자원 및 에너지, 기후변화 등 환경 정책 전반에 대해 견제·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상임위원회로서, 현재 기후환경본부, 푸른도시국, 상수도사업본부, 한강사업본부를 소관 부서로 정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이러한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관 영역을 고려해 ‘서울에너지공사’를 그 소관 부서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.

<표-1>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 략) 4. 환경수자원위원회 가. ~ 라. (생 략) 5. ~ 10. (생 략) ② (생 략)	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<u>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</u> 5.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

3 종합 의견

- 이상을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2016. 12월 말 출범 예정인 ‘서울에너지공사’를 위원회의 소관 분류에 맞춰 환경수자원위원회로 그 소속을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(재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8명, 전원찬성)

8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준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2월 9일
발 의 자 : 박준희·최영수·김동승·한명희김광
수(도봉)·최웅식·이상묵김광수(노
원)·박운기·최조웅진두생·이승로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집단에너지사업, 신재생에너지, 에너지시민복지를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설립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를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관부서로 서울에너지공사를 추가함.
(안 제33조제1항제4호마목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타
1) 신·구조문대비표
2)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: 별첨

서울특별시 조례 호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~ 3. (생략) 4. 환경수자원위원회 가. ~ 라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~ 10. (생략) ② (생략)	제33조(상임위원회의 소관) ①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<u>마. 서울에너지공사에 관한 사항</u> 5. ~ 10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